

다자녀 특별공급 안내문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 자격

구분	내용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①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거주 ② 만19세 미만의 직계자녀 3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④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및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 이상	- 이혼이나 재혼의 경우 ① 신청자의 자녀 : 신청자 및 배우자의 등본에 등재된 경우 인정 ② 재혼배우자의 자녀 : 신청자의 등본에 등재된 경우 인정
선정방법	- 해당지역(대전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 우선 공급 - 미달시 : 기타지역(대전시 1년 미만,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거주자 공급	
경쟁 시 우선순위	-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한 가점순에 따라 대상자 선정 -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는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유의사항	※ 임신과 입양의 경우, '임신진단서' 등과 같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입주 전 파양이나 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 자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 (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 (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5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 (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 (5)	15	10년 이상	15	주택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대전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 저축가입기간 (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 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본 안내문은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재오류·미기재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제출서류[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2021. 10. 28. 이후 발행분]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대상	서류 발급 기준 및 유의사항
공통 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 서약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본인	건본주택 비치(정보취약계층만 해당) ※ 인터넷 청약(청약Home 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건본주택 비치, 개인정보수집 안내(신청자용)
	○		주민등록표등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거주기간 확인이 필요한 경우(단 1961. 01. 01 이전 출생자는 1961. 01. 01 ~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로 설정) ※ 기록대조일을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반드시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		청약통장순위 확인서		※ 인터넷 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인 경우 제외
	○		복부 확인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국내거소신고증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본인 발급용)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만19세 이전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혼 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임신진단서	본인 (또는 배우자)		이혼 및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상세"로 발급
○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출산한 경우 출산 증명서
○		출산이행 확인각서	자녀		입양의 경우(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임신의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		기본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재혼 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출생 관련 일자 확인 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 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소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해외체류 증빙서류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만18세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 국내기업 및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일 경우 : 파견 및 출장 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 사정 불인정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대리인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동반 체류 시 단신부임 인정 불가) • 기록대조일을 본인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 10. 28.)로,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 "Y"로 설정하여 발급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국외 체류기간 연속 90일 미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 부임 인정 불가
○		위임장		대리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위임용(본인 발급용)
○		대리인의 신분증, 인장	대리인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건본주택 비치
○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외국 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출서류(신청자 구비서류)는 최초모집공고일(2021년 10월 28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인감증명서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상기 제출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표기하여 발급 받은 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이 필요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합니다.

※ 본 안내문은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재오류·미기재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